

東集교수(내과)를 발령했다.

- ▲ 자문위원 = 李容珪 朴龍輝 李鐘武 鄭煥國
- ▲ 실무위원 = 金丞兆 趙聖勳 金仁哲 金春烈
金善武

◆ 성바로 장학회발족

— 성바로병원 —

성바로병원에서는 일반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성바로 장학회를 설립, 1978년 7월 1일 발족했다. 이 장학금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 開院 3주년 총 37만평 診療

— 현대중공업부속병원 —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재구관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아 개원한 부속병원(병원장=유순자수녀)이 금년 10월 1일로 3주년을 맞았다. 병원장수녀를 비롯 수녀 9명, 의사 31명, 의료기사 12명, 간호원 84명, 기타직원 등 총 2백 40여명이 14과를 중심으로 활동을 펴온 부속병원은 금년 8월말 현재 입원환자 7만 3천 3백 38명, 외래환자 29만 2천 5백 79명 등 총 36만 5천 9백 62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녀들은 병원내에서 지체불구자, 척추마비자, 산재중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냉담자회두와 예비자인도에 힘쓰는 한편 바쁜 일과속에서도 전하동성당에 나가 성가와 교리등도 지도하고 있다.

이병원은 현대중공업회사가 종업원과 그 가족 및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사업장의 환경보호를 통해 명량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에 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 國內 첫 「循環器센터」 발족

— 성바로병원 —

1백만불 상당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설치되는 순환기센터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톨릭대부

속 성바로병원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순환기 질환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또한 이방면의 의학 교육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의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립되는 가톨릭 순환기센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지역적, 인적특성에 따라 특징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당초계획의 일환에서 시도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톨릭대대선 순환기내과를 전공한 金三壽교수를 5월 1일부로 부속 성바로병원 내과과장겸 순환기센터소장으로 전보발령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도입은 JICA의 협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日本측에선 가톨릭측의 실정을 파악키위해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세부사항을 답사했다.

순환기센터의 소장으로 발령된 金三壽교수는 이제 계획이 3년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1차년도인 금년말까지 순환기센터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도입 설치하게 된다고 했다.

國內최초의 대규모 순환기센터의 설립은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추세에 비추어보더라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부속병원 의무원장 이동발령

— 가톨릭중앙의료원 —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1일부로 산하부속병원 의무원장을 아래와 같이 이동 발령했다.(괄호안은 전임지)

- 성빈센트병원의무원장 유 철(성가병원)
- 성가병원의무원장 현응설(성바로병원)
- 성모자애병원의무원장 박양근(성모자애병원)
-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김 진(9월 15일부 재단 발령)

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불가능할 경우 진료권내의 병원급이상의 요양취급기관이 치료불가능한 사유 기재의 소견서를 발급했을때, ② 해당진료권내의 요양취급기관보다 他진료권내의 요양취급기관이 더 가까이 있을 경우 공단측이 이를 인정했을 경우 ③ 진료권외에로의 출장·여행 또는 기타부득이하다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와 ④ 기타 공단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때에는 진료권을 이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이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때에는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이를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로서 그 뜻을 통보하는 한편 이때 공단은 그 지정통보를 의료관계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특히 그지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의료보험에 관한 교육을 받을것을 조건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밖에 同지정방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지정취소는 ① 급여청구의 부정이 있거나 법 67 조제 1항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 허위보고 및을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여 보사부장관이 지정취소를 명한때 ② 医療法에 의거 면허취소·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③ 공단이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2 회이상 계속하여 이수치 않을때 ④ 의료단체에서 제재처분을 받은자로서 의료관계단체가 지정취소를 요청한때 ⑤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기록을 부실기재했을경우 공단이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 이때 공단으로부터 지정취소의 통보를 받은 의료관계단체장은 요양취급기관지정서를 회수 공단에 반납토록 했다.

한편 요양취급기관중 진료권내의 소재지변경 신청개설등 지정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관계단체의장은 이를 공단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공단은 요양취급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의 사실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때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14 차 파견 修鍊医배치

— 無医面·市·道立病院 등에 —

社部는 10월 1일부터 근무할 파견修鍊医를 국립병원 14 명, 赤十字병원 6 명, 경기도 36, 강원 29, 충북 29, 충남 34, 전북 39, 전남 59, 경북 36, 경남 45, 제주 9 명등으로 파견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3 백 28 명의 14 차파견修鍊医를 근무기관별로 보면 無医面に 2 백 48 명, 市·道立病院 45 명, 특수병원 9 명, 病院船에 6 명이 배치된다.

◆ 公務員·私立学校職員 医療保險예산

— 1 백 14 억원 요구 —

保社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公務員 및 私立学校 교직원 醫療保險에 필요한 予算을 1 백 14 억 1 천 1 백 23 만 7 천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79년도 予算案에 반영, 요구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醫療保險法施行令 제 31 조 (政府保險料額의 計上)에 의하면 ① 공무원인 피보험자에 대한 政府부담保險料額은 당해 피보험자의 奉給예산을 기준으로 算定, 그 奉給예산을 계상하는 各會計別로 이를 計上하고 ②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정부부담 보험료액은 保社長官이 피보험자의 奉給月額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소관예산에 計上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保社部는 公務員 피보험자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 백 4 억 5 천 9 만 3 천원을, 私立学校 교직원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9 억 6 천 1 백 14 만 4 천원을 각각 책정하여 79년도 保社部 予算案에 반영 計上시켰다.

保社部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의료보험적용대상 公務員은 65 만 1 천 75 명에 부양가족이 2 백 60 만 4 천 3 백명, 私立学校 교직원이 7 만 3 천 71 명에 부양가족이 29 만 2 천 2 백 82 명으로 수혜대상자는 모두 3 백 62 만 7 백 30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無医지역 3年근무후 實役대체케

— 英軍醫要員「公衆보건醫師」로 —

정부는 내년부터 無医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軍所要에 充당하고 남은 人力

은 이를 예비역에 편입, 無医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케함으로써 의료혜택의 균점을 도모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国民保健医療을 위한 特別措置法」(案)을 지난 22일의 國務會議에서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사부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특별조치법(안)은 実役복무를 마치지 않고 예비장교에 편입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공중보건醫師」로 하여 3년간 도서·벽지등에서 근무하고 나면 軍實役복무를 마친것으로 하였으며 공중보건醫師에 대한 종사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외에 공중보건醫師는 근무기간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醫師에 대한 報酬는 軍人報酬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공중보건醫師가 3년간의 의무기간중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역을 14일 이내의 기간 離脱時에는 그 이탈기간의 5 배수를 연장 근무해야 하고 15일 이상일때에는 不履行者로 보아 보충소집으로 実役복무케 하며 5년내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재 無医面 3백 94 개소가 오는 81 년도에는 완전히 一掃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裝備現代化 위해 2천만弗

— 医協에 借款 신청 —

医協이 의료기관의 장비현대화를 위해 차관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전국의 회원에 신청토록한 결과 1천 9백 81 만 1천 4백 95 불이 신청되었다.

이들 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이 7개 기관에서 2천 2백 65 병상을 증설키위해 차관을 희망했고 병원급이 37개에서 2천 74 병상을 늘리기 위해 의원급이 14개 기관에서 병원으로 전환 5백 60개 병상을 확보키 위해 차관을 신청했다.

医協에선 이를 집계 이들 保社部에 제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힘써줄것을 건의했다.

◆ 医学用 標準語 발간

— 科技總聯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閔寬植)는 基礎医学, 臨床医学等 25個医学分野全般에 걸친 13만 3천여 医学用語를 統一標準化한 국내최초의 綜合医学用語集을 發刊했다.

◆ 啓明·嶺南·仁濟医大 신설인가

— 기존의대 정원도 1백명 증원 — 문교부 —

文敎部는 79학년도 大學入學定員을 확정 발표하면서 啓明大·嶺南大·仁濟医科大学등 3개 醫大를 新設승인하는 한편 朝鮮医大 40명, 順天鄉医大 20명, 延世医大原州分校 40명등 1백명의 醫予科정원을 증원 조정함으로써 全國의 医科大學數는 18개교로 늘어났으며 醫予科入學定員은 1천 9백 40명으로 증원 조정되었다.

△ 全國医大医豫科定員現況

1979학년도

大學名	增員	定員	비고
서울医大		160	
延世医大	40	200	原州分校 40
高麗医大		100	
가톨릭医大		100	
梨花医大		60	
慶熙医大		80	
漢陽医大		120	
中央医大		60	
釜山医大		120	
慶北医大		140	
忠南医大		100	
全北医大		100	
全南医大		140	
朝鮮医大	40	120	
順天鄉医大	20	100	
啓明医大		80	新設
嶺南医大		80	新設
仁濟医大		80	新設
計	100	1,940	18개 醫大